

아래는 누버거버먼자산운용(주)의 내부통제기준 제 56 조에 따른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 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 33 조의 2 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 피더 펀드가 보유한 자산 및 거래에 관한 정보
-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 누버거버먼자산운용(주) (이하, “회사”)는 집합투자업 (추후, 투자일임업 또는 투자자문업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음)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외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집합투자업 또는 부수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서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회사내에 부서간 별도의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대상 부문 또는 대상 정보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거래주의목록(Watch List) 및 거래제한 목록(Restricted List) 지정 기준

- 회사는 일반적으로 상장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미공개주요정보를 취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공개주요정보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거래제한목록 (Restricted List)에 포함하여 누버거버먼그룹의 정보차단정책 (Neuberger Berman Information Barrier Policy)에 따라 컴플라이언스팀에서 관리합니다.
- 거래주의목록(Watch List)에는 다양한 이유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공개주요정보에 대한 요청이 거절된 경우 또는 거래제한목록에 포함될 필요가 없거나, 법규상의 고려에 의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조건에 대한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거나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해상충 및 법령위반 가능성을 해소하고 거래합니다.

- 회사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Front running
-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의 거래
- 집합투자재산간의 거래
-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5.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제 3 절 정보차단벽 참조